|  |
| --- |
|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|

 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
 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” 등으로 기재

2. 근 무 장 소 :

3. 업무의 내용 :

4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 ( )요일 |
| 근로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 시간 |
| 시업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
| 종업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  시 분 |
| 휴게 시간 |  시 분~ 시 분 |  시 분~ 시 분 |  시 분~ 시 분 |  시 분~ 시 분 |  시 분~ 시 분 |  시 분~ 시 분 |

 ㅇ 주휴일 : 매주 요일

5. 임 금

 - 시간(일, 월)급 : 원(해당사항에 ○표)

 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

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: 원(내역별 기재), 없음 ( ),

 -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: %

 ※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%이상의 가산임금 지급(’14.9.19. 시행)

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
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)

6. 연차유급휴가: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

7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
 □ 고용보험 □ 산재보험 □ 국민연금 □ 건강보험

8. 근로계약서 교부

 - “사업주”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“근로자”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“근로자”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
9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
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
10. 기 타

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 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(전화 : )
주 소 :
대 표 자 :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
연 락 처 :
성 명 : (서명)